

# 「제6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」 우수 단체·개인 수상자 공모계획(안)

2021. 2.

## 1. 개요

1. 공모분야 : 「농촌재능나눔 실천 우수 단체 및 개인」

2. 추진목적

- 농촌재능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·포상하여 농촌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재능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을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최/주관 : 농림축산식품부/ 한국농어촌공사(농어촌자원개발원)

4. 포상규모

구분	계	〈제6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〉				
		정부포상		농정포상	국회포상	공사포상
		대통령	국무총리	장관	국회의원	사장
수량	21	2	2	11	1	5

\* 포상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## 2. 참여대상 및 자격

1. 참여대상 : 2년이상 농촌재능나눔 실천 단체 및 개인

※ 개인 및 단체로 중복 신청 금지

2. 신청자격

구분		신청자격
정부포상	대통령	농촌재능나눔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(단체포함)
	국무총리	〃
농정포상	장관	농촌재능나눔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(단체포함)
국회포상	국회의원	〃
공사포상	사장	농촌재능나눔분야에서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(단체포함)

3. 접수기간 : 2021. 2. 19(금) ~ 3.19(금)

※ 접수기한은 2021.3.19.(금), 18:00까지(시스템 자동차단 기능 부여)

4. 응모방법 : 스마일재능뱅크([www.smilebank.kr](http://www.smilebank.kr)) 온라인 응모

※ 응모서류(응모원서, 개인정보동의서)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

5. 응모서류 : 응모원서, 개인정보동의서

6. 응모분야 : 4개의 재능나눔 부문

부 문	재능분야(예시)
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을발전계획    ■ 정보통신/인터넷</li> <li>■ 마을홍보    ■ 재배/생산/수확 후 관리</li> <li>■ 판매/제품홍보, 금융/보험, 법률/자문</li> </ul>
주민건강 및 복지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의료/보건/건강    ■ 노인/장애인</li> <li>■ 생활복지    ■ 다문화가족지원</li> </ul>
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생활환경/시설개선    ■ 마을환경개선</li> </ul>
주민교육 및 문화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아동보육/청소년지도</li> <li>■ 평생교육    ■ 문화예술</li> </ul>

※ 단체 및 개인은 1개 부문으로만 응모 가능.

단, 여러부문에 걸쳐 활동한 단체 및 개인은 모든 내용을 기술하며 그 중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응모 (평가는 전체내용 평가)

7. 선정방법

○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: 농촌재능나눔 전문가 5~6명으로 구성

○ 실적검증 및 추천에 의거 수상후보자 선정 후 최종검증 및 선정

8.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: 11월 예정

### 3. 포상기준 및 선정기준

#### □ 포상기준

-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단체 및 개인
- 개인포상인 경우는 가급적 기관장, 단체장 위주보다 드러나지 않게 농촌재능나눔활동을 실천한 자
- 단체포상인 경우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마을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

#### □ 선정기준

##### <수공 기간>

-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 포함)
- 장관·국회의원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 포함)
- 사장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공적을 쌓은 자(단체 포함)

##### <재포상 및 이중포상 금지(수여일로부터 응모일 기준)>

- 정부포상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)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5년 이내에 포장을, 3년 이내에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
  - 정부포상 수여자(모범공무원 포함)는 그 포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장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
- 이 외 일반적인 사항은 '21년도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의함

##### <주요 응모 제한 사항>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 처분을 받은자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\* 등

\*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 - 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-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의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-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등
- 세부적인 사항 및 이 외 일반적인 사항은 ‘21년도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업무지침」에 의함

## □ 포상 대상자 검증 및 선정

- 선정절차
  - 서류·예비심사, 심사위원회 1,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결정
- 심사기준
  - 농촌재능나눔 실천수행 환경, 계획성, 수공 기간, 자발성, 공적 수준, 나눔확산 기여도, 특히 공적 등을 기준을 활용하되,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 및 세부 지표를 결정하여 심사

## 4. 추진일정

